

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종합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1. 4. 14. ~ 4. 27. (10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◇◇◇ 외 3명

■ 감사내용

- ‘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’ 등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 운영실태
- 회계 처리 적정성 및 기관 운영 실태
- 기타 불합리한 업무관행 · 규정 등 개선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건, 천원)

합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현지 조치	모범 사례
주의 (경고)	시정	개선	통보 등							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8	1,643				1	1,643	1	2	1	2	1	

* 별첨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' 등록 의무 미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자는 우리부 훈령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조금 사용 내역을 「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」에 입력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, • 입력대상 '창작팩토리' 등 28개 사업('08년~'10년) 중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등 13개 사업의 보조사업비 입력을 누락하였고, • 간접보조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('10년부터)하여야 함에도 3개 보조사업의 간접보조금 사용내역 입력을 누락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보조사업비 관리 시스템 입력의무를 소홀히 하였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사용 내역 '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' 입력 관리 철저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, • 창작팩토리 사업 등 6개 보조사업비(총 11,460백만원)에서 총 1,643천원을 직원 단체상해보험료나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고, - 일부 보조금의 경우 교부기관의 승인 없이 당초 예산항목과 달리(운영비⇒인건비, 업무추진비) 집행(11백만원)하였으며, - 업무추진비는 기재부 '예산집행지침'을 근거로 자체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수 및 시정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도 외 집행액 1,643천원 환수 - 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마련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경비 지출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조금은 교부기관이 사용할 수 없는데도, • 보조금 교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(문화나눔부)는 동 연합회에 지원한 "소외계층 문화순회" 등 보조사업비에서 문화나눔 사업('10.5월~'11.2월)에 대한 홍보 및 평가비용 등 소요경비(123,701천원)를 집행 요청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,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요구 및 경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이 필요한 경우 문예기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, 위원회 집행경비를 보조사업자가 지출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- 기관 경고 (한국문화예술위원회)

연번	지적 내용	조치사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위원회는 상기 금액 중 업무추진비 9,243천원을 연합회로부터 보조사업비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. 	
4	<p>○ 공연예술단체 연수단원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의 취업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예술분야의 대학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'공연예술단체 연수단원 육성사업'을 추진하면서 공연예술단체(105개)에 연수단원(389명)을 채용하여 인건비 1,931백만원(월 100만원/1인, 총 162백만원)을 지원하였으나, - 이 중 55개 단체에서 채용한 연수단원(90명)은 대학재학생, 휴학생, 고졸자 등으로 동 사업의 채용요건(대학 미취업자)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채용함으로써 보조사업비(442백만원)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. 	<p>○ 주의 요구</p>
5	<p>○ 문예회관 지원 사업 지역안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청년인턴채용 지원사업' 및 '문예회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'을 추진('08년~'10년)시 85개 단체(162명)에 단원 인건비(월 100만원 / 1인)을 지원하면서, · 선정 기준에 지역안배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안배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채용 비율이 높아 형평성 문제 야기 	<p>○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안배 고려 지원기관 선정 시 지방 비율 확대 검토
6	<p>○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사업 적정성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문예회관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"제주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사업"('08년 211백만원/7일, '09년 244백만원/7일, '10년 576백만원 /9일)을 추진하면서, · 주요 행사 내용이 아트마켓, 쇼케이스, 학술행사, 문예회관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아트마켓 전시에 따른 실적이 미흡하고,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문예회관 관계자들의 정보공유 및 문예회관 운영활성화임에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고 있고, · 매년 동일 장소(◇◇◇)에서 행사를 개최하고, 행사 명칭을 '제주 해비치'로 한 사유가 ◇◇◇의 모기업인 ○○○에서 행사 초기부터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바, 특정 기업의 후원 때문에 매년 동일 장소에서 행 	<p>○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요예산 대비 성과 및 효과 평가 실시 - 평가결과에 따라 행사지속 여부 및 행사지속 시 행사평창, 지역별 순회 개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

연번	지적 내용	조치사항
	<p>사를 개최하고, 회사명이 포함된 행사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, 기관의 목적 및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순회 개최 검토 필요</p>	
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국립예술단체 방방곡곡 문화공감' 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단체의 공연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공연수당·공연사례비·진행비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체마다 상이하게 집행하는 한편, - 일부 국립예술단체의 경우 공연수당(10천원/1인), 숙박비(25천원/1인)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 기준과는 다르게 공연수당(120천원/1인)과 숙박비(40천원/1인) 단가를 적용한 예산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검토·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선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예산 편성 관련 자체 지침 및 규정 마련
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·회계 처리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연합회에서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예산회계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10년도 제주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공연기획사업 계약금액(55백만원)이 수의계약 한도(5천만원)를 초과 함에도 수의계약 하였고, •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회계규정에 명시한 회계 장부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, 예산집행 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출원인행위부 등 사용